

학교도서관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안 번호	11638
----------	-------

제안연월일 : 2018. 1.

제안자 :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

1. 제안경위

가. 상정경과

건명	의안번호	대표발의자 (제출자)	발의일자	전체회의 상정
학교도서관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제706호	이찬열의원	'16.7.6.	제346회 국회(정기회) 제8차 전체회의 (’16.11.16.)
	제6860호	정병국의원	'17.5.11.	제354회 국회(정기회) 제1차 전체회의 (’17.9.18.)

나. 제354회 국회(정기회) 제2차 교육 법안심사소위원회(2017.11.22.)
는 이상 2건의 법률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각 법률안
의 내용을 통합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다. 제354회 국회(정기회) 제9차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2017.12.1.)는
교육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2건의 법률안을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교육 법안심사소위원회가 마련한 대
안을 우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학교도서관을 설치하여 학생들이 책과 가까워질 수 있는 동기를 마련하고, 교과와 관련된 자료를 찾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지도하기 위하여 학교도서관에 사서교사 등을 둘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임의규정으로 되어 있어 절반 이상의 학교에서는 사서교사 등을 두지 않고 있음.

이에 학생들의 독서지도, 자료활용 등을 지도할 전문 인력이 없어 학교도서관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므로, 초·중·고등학교 도서관에 사서교사·실기교사 및 사서를 의무적으로 배치하도록 하는 한편, 정원·배치기준·업무범위 등은 학교 규모와 사서교사 등의 자격유형에 따라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여 학교 도서관 교육의 질 향상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12조제2항 및 제3항).

학교도서관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학교도서관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항 중 “둘 수 있다”를 “둔다”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정원·배치기준·업무범위 등에 필요한 사항은”을 “정원·배치기준·업무범위 등은”으로 하며,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사서교사 등의 정원·배치기준·업무범위 등은 학교 규모와 사서교사 등의 자격 유형을 고려하여 정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2조(전담부서의 설치 등) ① (생략)</p> <p>② 학교도서관에는 사서교사· 실기교사나 사서(이하 “사서교 사 등”이라 한다)를 둘 수 있다.</p> <p>③ 제1항에 따른 전담부서의 구성과 제2항에 따른 사서교사 등의 <u>정원·배치기준·업무범위</u> <u>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u> <u>으로 정한다.</u> <신 설></p>	<p>제12조(전담부서의 설치 등) ① (현행과 같음)</p> <p>② ----- ----- -----<u>둔다.</u></p> <p>③ ----- ----- -----<u>정원·배치기준·업무범위</u> <u>등은</u>----- -----<u>. 다만, 사서교사 등의 정</u> <u>원·배치기준·업무범위 등은 학</u> <u>교 규모와 사서교사 등의 자격</u> <u>유형을 고려하여 정한다.</u></p>